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필수 위임 사항과 관련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이탈 및 중복 조항 삭제(안 제5조, 제17조, 제31조, 제41조)
 -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·폐지 심의 생략 조항 삭제
 -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기준 별도규정 삭제
 - 건물 일부 대부시 근거없는 평가액 산정방식 삭제
 - 신탁의 종류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(안 제30조)
 -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과 일치
-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32조, 제40조)
 -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반영
 - 수익매각 조건에 대한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 반영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산지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필수 위임 사항과 관련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,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,

-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안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·폐지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심의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,
-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안 제17조의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에 대한 별도 규정과 안 제31조의 건물 일부 대부시 재산 평가액 산정방식, 안 제41조 신탁의 종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음.

- 또한,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0조의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과 일치시키고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2019. 6. 5.시행)에 따라 안 제32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으며, 「공유재산 관리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농업인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거나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